

의안 번호	2553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26.(목) 김태욱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2. 26.(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10.(화)

2. 제안이유

-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공용차량의 이용 횟수 및 기간,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 바.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4. 근거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및 제94조의2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5. 검토 사항

(1) 제정배경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과 공유하여 이동 수단, 여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유희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2) 내용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 명시
- 공용차량,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 이용자, 운전자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안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이용대상자에 대한 범위 각 4호 명시

다. 이용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이용신청 시간과 신청서 제출 사항 규정함.
- 구청장의 승인 여부 결정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규정
- 자격 여부 검토 사항 및 민원인 사용 통보, 탑승 인원에 따른 배차 공용 차량의 종류, 이용신청 취소 규정 등 명시함

라. 이용 횟수 및 기간,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동일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규정, 추가 이용 허용 가능 범위 등 명시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 규정
- 동의 받은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전자정부법에 따라 이용대상자·운전자의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 처리 규정 명시

바.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5가지 요건 규정
- 요건 미구비 확인시 이용승인 취소와 공용차량 입고 요구 규정 명시

사.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안 제11조)

- 공용차량의 출고와 입고에 관한 내용 규정
-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규정 명시

아. 이용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및 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12조~제13조)

- 이용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12개 항목 명시
- 위반에 대한 조치의 기준을 별표 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이 없는 주말 및 공휴일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과 공유하여 소외 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희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을 배려하였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차량의 이용신청, 이용횟수, 기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정하여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운전자의 자격,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의 소유는 필수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상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용차량의 무상 대여는 그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및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시행규칙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큰 거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5조(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무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